

제70회 제1차 목포시의회의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0년 8월 28일 상오 10시 45분
2. 폐 의 : 단기 4290년 8월 28일 하오 2시 55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 삼 성
5. 출석의원 : 재적의원 16명 전원
6. 출석공무원 :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7. 의사일정

◆ 보고사항

- 1) 제69회 회의록 통과
- 2) 청원서 처리 전말 보고
 - 남교동 제2공설시장
 - 빙설위생협회
- 3) 격리병사 신축 자재 보조 교섭 결과보고

◆ 부의안건

- 1) 목포시 소방세 조례 제정의 건
- 2) 단기 4290년도 제4회 목포시 일반 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 3) 단기 4290년도 제5회 목포시 수특회계 세출 경정 예산안
- 4) 단기 4290년도 주택건설자금 특별 회계 설치안
- 5) 단기 4290년도 주택건설자금 차입의 건
- 6) 단기 4290년도 주택건설자금 특별 회계 예산안
- 7) 시의회 정부의원 선거의 건
- 8) 각 상임 위원장 선거의 건

◆협의사항

목포시 제1회 공채 발행의 건

8. 토의사항

◎ 제69회 회의록 통과

◇서기 박 찬 대

- 낭독 의의 없음으로 통과

◎ 청원서 처리 전말 보고

1) 남교동 제2공설 시장 관계

◇산업과장 김 연 수

- 보고

2) 빙설위생협회 관계

◇보건주무 조 현 주 보고

◎ 격리 병사 신축 자재 보조 교섭 결과 보고

◇명 남 철 의원

- 교섭결과를 공개 회의석상에서 보고 하기 곤란한 형편이니 현금 체경중인 박사회과장 귀청을 기대려 구체적인 보고를 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안건

◎ 소방세 조례 제정의 건

◇서기 박 찬 대

- 제안 이유 설명하다.

◇김 경 인 의원

- 방화정책과 시민의 재산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서장이 임석 하였음을 계기로 소방행정운영 상황을 청취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3청이 있었다.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소방서장 박 찬 모

- 소방대 인원 문제, 의용 소방대 문제 및 소방시설 문제에 대한 자세한 답변이 있었음(초안 참조)

◇김 상 대 의원

- 지하수 탱크가 부패하여 유사시 혼란을 이끄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여하

◇박 소방서장

- 목포여객 애로의 당고(탱크)는 개수하였으며 상공회의소의 6호 당고는 금년 9월말까지 수리완료 할 계획입니다.

◇정 응 표 의원

- 당시의 도시계획은 왜정시에 이루어졌기 때무래 중앙지대는 지하탱크 시설등으로 방화혜택을 입고 있는 반면에 소방세 등을 균등히 부담하는 변동(邊洞)지대는 발화 하였자 속수무책인 것이다. 이에 대한 당국의 구상여하

◇박 소방서장

- 방화수를 저장시킨 탱크차가 대비하고 있음으로 변동도 조기발견만 하면 방화에 임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장 김 삼 성

- 이외 다른 질의가 없으면 본 건 상임위원회에 회부심의케 할 것을 선언하다.

◎ 단기 4290년도 제4회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의 건

◇서기 박 찬 대

- 제안 이유 설명하다.

◇의장 김 삼 성

-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심의케 할 것을 선언하다.

◎ 단기 4290년도 제5회 목포시 수도 특별회계 세출 경정 예산안

◇서기 박 찬 대

- 제안 이유 설명하다.

◇의장 김 삼 성

- 내무위원회에 회부심의 할 것을 선언하다.

◎ 단기 4290년도 목포시 주택 건설 자금 특별회계 설치안

◇사회주무 이 문 철

- 제안 이유 설명하다.

◇김 상 대 의원

- 기존하에 있는 재건 주택 특별회계와 그 성질이 여히히 틀린가

◇사회주무 이 문 철

- 재건주택은 입주자로 하여금 주택조합을 조직 운영케 되어 있으나 금반의 본건은 시장이 조합장이 되기 때문에 그 성질이 판이한 것입니다.

◇강 영 락 의원

- 원안 통과 동의하다.

- 재청 - 3청이 있었다.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단기 4290년도 목포시 주택자금 차입의 건

◎ 단기 4290년도 목포시 주택자금 특별회계 예산안

◇의장 김 삼 성

- 양 건 공히 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의케 할 시민들의 생활실정을 살리면 50여만환이상의 거액을 일시에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인 것이며 상세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시 보충설명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이 있었다.

◇김 성 균 의원

- 청원서에 사정가격의 고하를 알고 있는 것 같이 되어 있는바 그 경위를 설명하여 주기 바란다.

◇총무과장 장 건 식

- 시유재산의 감정은 5개 기관에서 공정한 사정을 해 노았든 것이나 이를 고가로 사정하지 않았는가의 기우에서 이러한 억측일 것이며 현재 시유재산의 임대료는 일반 임대료의 10분의1에 불과한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가옥의 보수운운으로 구실을 삼는다는 것은 전체 시민에 대하여 체면없는 처사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명도 책임도 시에서 부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 남 진 의원

- 총무과장의 설명은 너무 일방적인 발언인 것이다.

안가(安價)의 임대료와 명도책임은 시에서 부하토록 되었다 하나 그 결과를 잘되게 하여야 될 것이다.

- 해당되는 시유재산은 20여년전 건축한 것으로서 그후 판자일편 보수한 적이 없는 것이라 건축법규에 의 하드라도 문제의 시유재산은 전부 폐기 처분될 대상인 것이며 경쟁자가 없을만한 것이 태반이다

- 본 건 내무위원회에 일임하여 상대방과 협정할 수 있게 위임할 것을 동

의하다.

- 재청---3청이 있었다.

◇강 영 락 의원

- 시유재산매각 처분문제는 이에 관련된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문제이다.

◇김 남 진 의원

- 농지개혁 사업과 귀속재산 처리법등을 인용 발언하나, 본 건은 시유재산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니 만치 그와는 판이한 것이다.
- 그리고 본 건 진정서를 상의할 적에는 어떠한 혜택을 주자는 것만이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믿는다.

◇명 남 철 의원

- 저반 좌담회 석상에서 금년 12월말까지 지불하도록 결정한 것은 시 자체 부담액을 염출하기 위하여 3,000만원 공채 발행까지 추진하고 있는 형편이고 시의 일반경상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며, 12월말까지 충당하여야 할 자금이니 만치 대의에 입각하여 처결하여야 될 문제인 것이다.

- 김남진 의원 동의 재석 16명중 가 9표 가결되다.

◎ 의회 정부의장 선거의 건

◇강 영 락 의원

- 정부의장선거를 앞두고 우리 16명 의원은 물론이려니와 전 시민의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인데 요즈음 향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의장은 금일중으로 선출하나 부의장은 수일 후에 실시한다는 등 정치적으로 결부시킨다는 설이 떠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우선 이 점을 결정하고 회의에 들어가기를 참고로 말하는 바이다.

◇명 남 철 의원

- 작년의 의장선거와 같이 결선 투표에도 동수인 경우 여하히 할 것인가

◇서기 박 찬 대

- 완도군수와 도내무국장 간 조복(照覆)서류 낭독으로 해명함

◇김 창 희 의원

- 의장입후보를 사퇴한다는 요지의 발언이 있었음

- 김창희 의원 퇴장하다.

(12시 35분

현재)

◇정 응 표 의원

- 강영락 의원의 발언은 자기 스스로가 당리당락을 위한 모책인 것이다. 그러한 결정은 안 짓고 들어갔더라도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김 일 섭 의원

- 결선투표시 동점인 경우에는 년장자로 하여금 당선시킬 것을 동의하다.

- 재청---3청하다.

◇정 응 표 의원

- 경장지도(敬長之道)를 모르는 소치는 아니나 작년의 정부의장 선거시를 회상하더라도 그러거니와 꼭 년장자라야만 유능하기 때문에 우대권을 준다는 것도 모순일 것이다.

◇강 영 락 의원

- 전반 회의에 본 조항의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부결되었든 것이나 국회의 예나 타선거법규등 준용하여 추첨으로 할 것을 개의하다.

- 재청---3청이 있었다.

◇김 남 진 의원

- 양 안이 나왔으나 반대하는 바이고 사회자로 하여금 결정권을 가지도록 재개의하다.

- 재청---3청이 있었다.

◇김 경 인 의원

- 강영락 의원의 개의에 찬성 발언하다.

- 각 동의 표결 결과

김남진 의원 재개의 15명중 가 4표 부결

강영낙 의원 개의 15명중 가 6표 부결

김일섭 의원 동의 15명중 가 4표 부결

◇의장 김 삼 성

- 3안 공히 부결이다. 제의원들이 각 동의 골자를 납득치 못한 것 같으니 재차 표결할 것을 선언

- 표결결과

김남진 의원 재개의 15명중 가 3표 부결

강영락 의원 개의 15명중 가 8표 가결

◇의장 김 삼 성

- 결선 투표시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지을 것을 선언하다.

- 감표위원으로는 김상태, 김성균 의원 지명함.

- 의장 선거 개표결과

김삼성 의원 14표 당선

이정권 의원 1표

◇의장 김 삼 성

- 김삼성 의원이 14표로 당선되었음을 선언하다.

◎ 부의장선거

◇김 남 진 의원

- 부의장선거에 임하기 전 한시간 휴회할 것을 동의. 재청---3청
- 표결 결과 재석 15명 가 5표 부결
- 정응표, 김남진, 김상대, 김성균, 명남철 의원 퇴장

◇김 경 인 의원

- 의장에는 여당에서 절대 다수의 득표로 당선되었다. 부의장에는 야당계에서 선출될 것을 우려하여 다섯 의원이 퇴장 전술을 쓰고 있으나 시의회는 정치를 하는 국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사한 처사는 비난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강 영 락 의원

- 정부의장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하여 모 의원은 지나친 기우라고 반박한바 있었으나 방금의 현장은 틀림없는 사실이 아닌가 점심시간이 경과하여 기진맥진하는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부의장선거를 하는데 10분간 가량은 인내할 수 있을 것이다. 야당은 이북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부의장 일석이라도 차지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몇 의원의 여사한 술책은 가증한 일이며 오후에라도 속개하여 진행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

◇김 일 섭 의원

- 무소속 4의원은 아직까지 퇴장하여본 사례가 없다 그러나 자기정당의 이념에 안맞으면 퇴장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의장 김 삼 성

- 오전회의 휴회 선언하다. (하오 1시 15분 현재)
- 천철수 의원 퇴장하다.

- 오후회의 속개 선언하다.

(하오 2시 40분 현재)

-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장선거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몇 의원의 퇴장으로 정족수 미달이니 부득이한 일이다.

◎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의 건

◇의장 김 삼 성

- 강영락 의원의 5의원의 제안으로 본 건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니 논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서기 박 찬 대

- 낭독

◇강 영 락 의원

- 제안 이유 설명하다.

- 본 건 제7조 2항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운영의 향상발전에 수반하여 본 도의회나 타 시의회에서도 그 그회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시의회에서도 이와 같이 실시하도록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니 찬성하여 주기 바랍니다.

◇김 일 섭 의원

- 타 시의회에서는 얼마나 이 개정안과 같이 실시하고 있는가 집행부에서는 각기 조회하여 주기 바란다.

◇김 경 인 의원

- 비근한 예로 당 시의회 산업분과위원회를 들더라도 정수4명에 2대2로 분파된다고 가정하면 곤란을 야기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점을 보아서라도 이 개정안을 찬성하는 바이다.

◇의장 김 삼 성

- 본 건 해당분과 위원회에 회부 심의케 할 것을 선언하다.

- 산회 선언하다.

(하오 2시 55분 현재)

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90년 8월 29일

시의원 조 양 순

시의원 강 영 낙

작성자 서기 주 도 식

제70회 제2차 목포시의회의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0년 8월 29일 상오 10시 35분
2. 폐 의 : 단기 4290년 8월 29일 상오 10시 50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 삼 성
5. 출석의원 : 재적 16명중 출석의원 10명
결석의원 : 정응표, 명남철, 김남철, 김상대, 김성균, 김창희 의원
6. 출석공무원 :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7. 의사일정

◆ 부의안건

(제70회 제1차 회의시와 동일함)

8. 토의사항

◎ 의회 부의장 선거의 건

◇의장 김 삼 성

- 정응표 의원 외 5의원으로부터 사정에 의하여 출석 못하겠다는 전화연락이 있어 주지하여 드립니다.

◇강 영 락 의원

- 작일 의장은 정부의장 선거를 실시한다고 선포하였을 적에는 정족수에 달하여 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부의장선거에 들어가자 투표용지까지 배부하였으나 모의원이 휴회동의를 하여 부결되자 퇴장전술을 썼음은 요사이 도의

회의 의장선거와 근사한 예로서 선거 요건이 성립되었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의장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겠고 명일이라도 의회 긴급 소집을 하여 부의장선거를 실시하여야 될 것이다.

- 부의장 선거를 위요하고 여당 측은 정략적이요 고의적으로 불참하였으나 시중여론은 여야1석씩 차지할 것을 희원하는 것이며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 여당은 목포시발전을 위한 것인지 쇠퇴를 기도한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으며 목하 당면한 중요2대사업을 놔두고 여야 옥신 각신만하고 있다면 지방발전에 가져오는 것이 무엇이 있겠으며 중앙에서는 어떻게 보겠는가

- 냉정히 비판하여 여야1석씩 차지하도록 특단 노력하여 주기 바라며 정상적인 의회 운영을 가지도록 기도하여 주기 바라는 바이다.

◇의장 김 삼 성

- 강 의원은 요지음의 도의회 의장 선거와 흡사하다고 인용하나 이와는 상반된 것이다. 왜냐하면 투표진행 중이 아니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날도 정족수 미달로 의사진행 불능하니 내9월 2일경 소집하기로 하고 제70회 회의는 폐회할 것을 선언하다.

(하오 10시 50분 현재)

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90년 8월 30일

시의원 임 석 희

시의원 김 일 섭

작성자 서기 주 도 식

제71회 목포시의회의회의록

1. 개 의: 단기 4290년 9월 2일 상오 10시 45분
2. 폐 의: 단기 4290년 9월 2일 상오 10시 48분
3. 장 소: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의장 김 삼 성
5. 출석의원: 재직 16명중 출석의원 8명
결석의원: 정응표, 김남진, 명남철, 박두순, 김일섭, 김성균, 김상대, 김창희 의원
6.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제 총무, 호병)

7. 의사일정

◆ 보고사항

1. 제70회 제1차 회의록 통과
2. 제70회 제2차 회의록 통과

◆ 부의안건

1. 의회부의장 선거의 건
2. 각 분과위원장 선거의 건

◆ 협의사항

제1회 목포시 공채발행의 건

8. 토의사항

◇의장 김 삼 성

- 금일의회의도 출석의원이 재적의원의 과반수미달로 부득이 유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현재)

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90년 9월 2일

시의원 김 경 인

작성자 서기 주 도 식